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56 발의연월일: 2021. 2. 17.

발 의 자:이해식·한병도·송재호

이형석 · 오기형 · 민형배

이소영 · 김민철 · 임호선

김병주 · 양기대 · 고영인

오영환 · 김영배 · 서영교

김민석 • 서영석 • 허 영

우원식 • 이성만 • 강득구

조오섭 · 김경협 의원

(2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이러한 재정분권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31%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아동·보육 관련복지사업 비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15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1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1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3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16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6호), 「제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100분의 21"을 "100분의 31"로 한다.

제71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21"을 각각 "100분의 31"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3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기초연금 사업과 지방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 아동·보육 복지 사업 등(이하"이양사업"이라 한다)의 정산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5호에 따른 목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이양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 1조제2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 ·도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 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	②
의 과세표준에 <u>100분의 21</u> 을	<u>100분의 31</u>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	
다.	
제71조(납입) ①・② (생 략)	제71조(납입)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③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	
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
<u>100분의 21</u> 중 5에 해당하는	<u>100분의 31</u>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	
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2
<u>100분의 21</u> 중 6에 해당하는	<u>100분의 31</u>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 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 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 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 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 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 다. (생 략)

<u><신 설></u>

3.	
	100분의 31
	가. ~ 다. (현행과 같음)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31 중 10에 해당하
	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라 납입한다.
	<u>가.</u> 납입관리자는 국가가 전
	액 부담하게 되는 기초연
	금 사업과 지방이 전액 부
	당하게 되는 아동·보육
	복지 사업 등(이하 "이양

사업"이라 한다)의 정산 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 액을 같은 법 제18조제5호 에 따른 목적으로 운영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이양
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
하는 「지방재정법」 제29
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
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 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 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 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u>납입한다.</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